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0168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7.

발 의 자 : 한지아・박덕흠・김재섭
고동진・이종욱・우재준
조지연・배준영・조은희
김기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, 학대행위자가 다시 동물을 사육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여 재학대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또한 유죄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 동물을 신속히 보호・격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동물의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.

이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및 가처분 제도를 도입하고, 사육금지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 및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분양 제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・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, 제10조의3, 제45조제1항 단서, 제97조제3항제1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동물사육금지처분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검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

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검사는 동물의 소유자등이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동물에게 적정한 치료·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동물의 소유자등이 사육·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에 대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

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에게 해당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·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다.

제10조의3(처분의 통지 등) ① 법원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.

② 법원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의 명령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법원의 처분이 집

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④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.

1. 동물사육금지처분: 동물사육금지처분의 기간이 지난 때
2. 동물사육금지가처분: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된 때

제35조제1항 중 “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운영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4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동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동물학대·동물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
2.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
제97조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·관리 또는 보호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0조의2(동물사육금지처분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검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.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.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검사는 동물의 소유자등이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

	에 동물에게 적정한 치료·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동물의 소유자등이 사육·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에 대한 사육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.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사육이 금지되는 대상동물을 정하여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에게 해당 피학대동물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⑤ 제2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제4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·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다.
<신 설>	제10조의3(처분의 통지 등) ① 법원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

	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. ② 법원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의 명령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문의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결문 또는 결정문 등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0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육이 금지된 동물을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법원의 처분이 집

	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	④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.
	1. 동물사육금지처분: 동물사육금지처분의 기간이 지난 때
	2. 동물사육금지가처분: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이 선고된 때
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① ----------운영하여야 한다.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45조(동물의 기증·분양) ① 시·도지사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·관리될 수 있도	제45조(동물의 기증·분양) ① ----------

록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, 동물을 애호하는 자(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)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동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.
<신 설>	1. 동물학대·동물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
<신 설>	2.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97조(벌칙) ①·② (생 략)	제97조(벌칙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.
<신 설>	1. 제10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

	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동물사육금지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·관리 또는 보호한 자
1. (생 략)	1의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2. ~ 10. (생 략)	2. ~ 10.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